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2월13일) 상정
-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2월13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강덕면)

□ 개정이유

- 부천시의 개성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한시적(1991. 12. 31)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개정령안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1. 박장
제 출 자 : 부천시장

의안번호	제68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의 개성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한시적(1991.12.31)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청
2024. 11. 15.

부천시청 기획관리과 과장 김희정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5조(관리사) ①부천시 개성형성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에 도시개성형성관리사(이하 “관리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별정 6급 20호봉 상당의 정액(봉급월액, 상여금, 정근수당)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관리사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